

##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제정 2000. 02. 29 개정 2009. 03. 01  
개정 2018. 10. 29 개정 2019. 06. 2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경동대학교 정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 교원 인사 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사항 (개정 2019. 6. 24)
2.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적 기준
3. 교원에 대한 교육·연구 등에 관한 업적평가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임용기간 만료자의 재계약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5.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사항
6. 강사의 임용 등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3. 1, 2019. 6. 24)

제3조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5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장이 회의소집을 요청하여도 위원장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총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원격지에 위치한 캠퍼스 간에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29)

제6조 (의사정족수)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은 총장이 승인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정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

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